

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차 해 영 의원)

의 안 변 호	25-112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5. 10. .

발의자: 차해영, 권영숙, 남해석, 오옥자,
이한동, 채우진, 최은하, 홍지광

1. 제정이유

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
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)
- 마.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~제8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, 제28조

나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5조

다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9조

4. 조 례 안 : 불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5. 9. 23. ~ 9. 29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로컬크리에이터”란 지역의 자연환경,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2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
3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·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
2.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
3.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
4.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
5.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·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
6.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
2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

3.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,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(약칭: 중소기업창업법)

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708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]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(이하 “신산업·기술 창업”이라 한다)을 활성화 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예비재창업자, 재창업기업 등(이하 “창업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술성, 사업성, 혁신성,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·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8조(지역특화형 신산업·기술 창업의 활성화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·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소상공인기본법

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소상공인의 책무)**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

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(약칭: 소상공인법)

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704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]

제8조(소상공인 창업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
2.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·자문 및 교육
3. 자금조달, 인력, 판로 및 사업장 입지(立地)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

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·자문 및 교육
2.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·인력·판매·수출 등의 지원
3.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
4.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
5.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요인: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
및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운영 시 비용 소요

나. 관련조문

- 제5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
- 제7조(위탁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
할 수 있다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임재준
연 락 처	02-3153-8574